

#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규정

제 정	2016. 08. 31.
개 정	2016. 10. 07.
개 정	2019. 02. 26.
개 정	2021. 01. 25.
개 정	2022. 02. 21.
개 정	2023. 02. 08.
개 정	2024. 01. 25.

## 제 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우리나라 장애인양궁협회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효율적인 지도자·심판 및 선수육성과 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양궁협회(이하 “장애인양궁협회”라 한다.)의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〈개정 ‘24.01.25.〉](#)

**제2조(정의)**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“선수등록”은 장애인양궁협회에 선수(직장운동경기부, 일반부, 대회동호인부)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. [〈개정 ‘19.2.26.〉](#)
- “지도자등록”은 장애인양궁협회에 양궁지도자로 지도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. [〈개정 ‘24.01.25.〉](#)
- “체육동호인등록”은 장애인양궁협회에 대회 참가를 위해 선수로서 등록하는 대회동호인과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양궁협회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 등록하는 생활동호인으로 구분되며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. [〈개정 ‘19.2.26.〉](#) [〈개정 ‘24.01.25.〉](#)
- “심판등록”은 장애인양궁협회에 양궁 심판으로 심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. [〈개정 ‘19.2.26.〉](#) [〈개정 ‘24.01.25.〉](#)
- “등록선수”라 함은 제1호에 의거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.
- “등록지도자”는 제2호에 의거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지도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.
- “등록체육동호인”은 제3호에 의거 대회동호인과 생활동호인으로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. [〈개정 ‘19.2.26.〉](#)
- “등록심판”은 제4호에 의거 심판활동을 목적으로 심판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.
- “선수활동”은 제5호에 의거 장애인양궁협회의 각종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 [〈개정 ‘24.01.25.〉](#)
- “지도자활동”은 제6호에 의거 장애인양궁협회의 등록지도자로서 각종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“체육동호인활동”은 제7호에 의거 장애인양궁협회의 각종 대회 참가를 하는 대회동호인 활동과 시, 도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를 하는 생활동호인 활동을 말한다. [〈개정 ‘19.2.26.〉](#) [〈개정 ‘24.01.25.〉](#)
- “심판활동”은 제8호에 의거 장애인양궁협회의 각종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. [〈개정 ‘24.01.25.〉](#)

13. “경기단체”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정기맹, 준기맹, 인정단체를 말한다. <신설 ‘24.01.25.’>
14. “등록변경”이라 함은 장애인양궁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‘24.01.25.’>
15. “이적 동의서”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.
16. “통합정보시스템” (이하 등록시스템)이라 함은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.) 가 운영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. <개정 ‘24.01.25.’>
17. “도핑방지교육”이라 함은 세계반도핑규정에서 정하는 도핑방지교육을 말한다.
18. “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”이라 함은 정부 예방교육통합관리에서 주천하는 성희롱·성폭력 분야의 예방교육을 말한다. <신설 ‘21.01.25’>

**제3조 (제정의무)** ① 장애인양궁협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규정 제3조에 의거 해당 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‘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규정’으로 정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<개정 ‘16.10.7’> <개정 ‘24.01.25.’>

② 이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<신설 ‘16.10.7.’> <개정 ‘24.01.25.’>

③ 장애인체육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시, 도장애인양궁협의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이들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,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시, 도장애인양궁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‘16.10.7.’> <개정 ‘24.01.25.’>

④ 시, 도장애인양궁협회는 법제상별위원회 규정에 다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하여야 한다. <신설 ‘16.10.7.’> <개정 ‘24.01.25.’>

1.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조정에 관한 사항
3.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에 대한 자격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

**제4조 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장애인양궁협회에 등록된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과 이들의 등록 및 활동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.

②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등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의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.

③ 장애인양궁협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의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양궁협회가 정하는 대회별 참가요강에 의한다.

④ 외국국적자의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에 대하여는 W·A(세계양궁연맹) 규정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양궁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. <개정 ‘24.01.25.’>

## 제2장 선수 등록 및 활동

**제5조 (선수등록구분)** ① 장애인양궁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한다.

다만, 장애인양궁협회 특성에 따라 별도 부를 정할 수 있다. <개정 '24. 01. 25.>

1. 직장운동경기부
2. 일반부
3. 대회동호인부 <개정 '19. 2. 26.>

②장애인양궁협회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는 각 부별 등록에 따른 연령제한은 하지 않으나 각 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령제한은 대회참가규정에 따른다.

**제6조(선수등록)**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, 장애인양궁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스포츠등급분류를 필하고 선수등록을 한다. <개정 '19. 2. 26.><개정 '21. 01. 25.>

1.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<신설 '21. 01. 25>
2. 다음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<신설 '21. 01. 25>
  - 가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상이자
  - 나.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상이자
  - 다.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부상자
  - 라. 지원대상자 중 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의 상이자(2012. 6. 30. 이전 등록자)

**제7조(선수등록 제한 및 취소)** ① 장애인양궁협회 정관 제25조 제2항 1호에서 6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등록을 할 수 없다. <신설 '21. 01. 25>

② 등록절차를 마친 선수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**제8조(선수등록 시기)** ① 등록기간은 장애인양궁협회에서 결정하되 선수등록은 매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하며, 신규 등록한 선수 및 신설 팀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'24. 01. 25.>

② 추가 등록기간은 3월 28일까지로 한다. 단. 부득이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5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'16. 10. 7> <개정 '24. 01. 25.>

③ 선수는 등록 마감일(추가등록 마감일 포함)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. <개정 '24. 01. 25.>

④ 2년 이상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.

**제9조(선수등록자격)** ① 선수등록은 장애인양궁협회의 정해진 등급분류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 <개정 '24. 01. 25.>

② 장애인양궁협회의 선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직장운동경기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
2. 일반부와 대회동호인부는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 <개정 '19. 2. 26.>

**제10조(선수등록비)** 선수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장애인양궁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11조(선수등록자격의 제한)** ①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

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양궁협회에서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② 동일인이 직장운동경기부, 일반부, 대회동호인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.

③ 동일인이 종목을 달리하여 선수생활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경기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. <개정 '16. 10. 7. >

④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'24. 01. 25. >

**제12조 (선수등록 절차)** ① 시, 도장애인양궁협회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를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 01. 25. >

1. 선수등록은 대한장애인양궁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팀으로 신청 할 수 있다. <신설 '24. 01. 25. >

2. 선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선수카드를 포함한 선수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 <개정 '19. 2. 26. > <개정 '24. 01. 25. >

3. 시·도 장애인양궁협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란에 확인하여 시,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. 다만, 시, 도장애인양궁협회가 결성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, 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. <개정 '24. 01. 25. >

4. 시·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제2차 심사 후 경유란에 확인하여, 장애인양궁협회에 최종심사요청을 해야 한다. <개정 '24. 01. 25. >

5. 장애인양궁협회는 선수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,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. <개정 '24. 01. 25. >

② 장애인양궁협회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'24. 01. 25. >

③ 등록 선수의 기본정보, 경기실적, 상별사항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<개정 '24. 01. 25. >

④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'한국도핑방지규정' 준수 서약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 01. 25. >

**제13조 (선수 등록지)** 선수 등록은 개인 및 단체(팀)가 소속되어 있는 시·도 장애인양궁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장애인양궁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. <개정 '19. 2. 26. > <개정 '24. 01. 25. >

**제14조 (선수 등록변경)** ① 선수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에서 변경사유를 심사·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단체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1. 소속단체(또는 팀)의 해체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계약만료

2. 거주지 변경(생계유지, 직장이직, 가족단위 이사 등 이에 준하는 사항)

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거주지가 변경되는 선수는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④ 삭제<개정 '19. 2. 26>

⑤ 이 규정과 시, 도장애인양궁협회 등록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등록변경은

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'24. 01. 25.>

**제15조(선수구제)** ① 선수는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의·조정하여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해당 소속단체장은 의견을 제시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개정 '16. 10. 7>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이적동의서 발급을 부당하게 기피하는 경우,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일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적으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한다. 이 경우 해당 소속단체장은 구제 결정을 따라야 한다. <신설 '16. 10. 7>

③ 등록된 선수가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, 그 사실이 기록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,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구제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양궁협회는 선수의 요청에 따라 즉시 부당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.

⑤ 선수가 장애인양궁협회로부터 받은 최종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선수활동의 자격)** 장애인양궁협회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양궁협회의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'24. 01. 25.>

**제17조(선수활동의 제한)** ① 장애인양궁협회는 이적을 원하는 선수가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변경일로부터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한다.

②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장애인양궁협회의 실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
③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. <개정 '24. 01. 25.>

④ 등록된 선수가 장애인양궁협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양궁협회의 규정에 따라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제12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자가 장애인양궁협회의 최종 확정이 되지 아니한 자는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.

⑥ <개정 '19. 2. 26>

**제18조(선수활동 제한의 예외)**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1. 부상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양궁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입원 또는 입원이외의 일반치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<개정 '24. 01. 25.>
2.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(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·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한한다)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

3. 계약의 만료 또는 사직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 발급 기피로 인하여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로부터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
4. 외국에서 귀국한 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하거나, 우수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시·도장애인양궁협회와 시·도장애인체육회장의 추천으로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가 승인한 자

### 제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

**제19조 (지도자 등록 자격)** 장애인양궁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'23.02.08. > <개정 '24.01.25.>

1.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
  - 가.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  - 나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2.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<신설 '23.02.08. > <개정 '24.01.25.>

**제20조 (지도자등록)** 지도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양궁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자등록을 한다.

**제21조 (지도자등록 제한 및 취소)** ① 장애인양궁협회 정관 제25조 제2항 1호에서 6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'21.01.25. >  
②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**제22조 (지도자등록 시기)** ① 등록기간은 장애인양궁협회에서 결정하되 매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하며, 신규 등록한 지도자 및 신설 팀은 예외로 한다. 다만, 추가 등록 기간이 규정에 없는 한 5월 31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지도자활동을 제한한다. <개정 '24.01.25.>  
② 추가등록기간은 3월 28일까지로 한다. 단, 부득이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5월 3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되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01.25.>  
③ 지도자는 등록 마감일(추가등록 마감일 포함)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. <개정 '24.01.25.>  
④ 2년간 미등록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.

**제23조 (지도자등록 자격)** 지도자등록은 장애인양궁협회의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 <개정 '24.01.25. >

**제24조 (지도자등록비)** 지도자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장애인양궁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25조 (지도자등록 절차)** ① 시·도장애인양궁협회는 시·도 장애인체육회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01.25.>

-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자카드를 포함한 지도자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- 시·도장애인양궁협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 란에 확인하여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. 다만, 시·도장애인양궁협회가 결성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.
- 시·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제2차 심사 후 경유 란에 확인하여, 장애인 양궁협회에 최종심사요청을 해야 한다.
- 장애인양궁협회는 지도자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,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.

② 장애인양궁협회는 [통합정보시스템](#)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〈개정 ‘24. 01. 25.〉

③ 등록 지도자의 기본정보, 경기실적, 상벌사항 등을 [통합정보시스템](#)을 통하여 등록하고, 자료 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〈개정 ‘24. 01. 25.〉

④ [통합정보시스템](#)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‘[한국도핑방지규정](#)’ 준수 서약을 하여야 한다. 〈개정 ‘24. 01. 25.〉

⑤ [통합정보시스템](#)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[의무적으로](#) 이수하여야 한다. 〈신설 ‘21. 01. 25.〉 〈개정 ‘24. 01. 25.〉

**제26조 (지도자 등록지)** 지도자 등록은 개인 또는 단체(팀)가 소속되어 있는 시·도장애인양궁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장애인양궁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. 〈개정 ’19. 2. 26.〉

**제27조 (지도자활동의 자격)** 장애인양궁협회의 지도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양궁 협회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‘24. 01. 25.〉

## 제4장 심판 등록 및 활동

**제28조 (심판등록 구분)** ① 장애인양궁협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, 장애인양궁협회 특성이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. 〈개정 ‘24. 01. 25.〉

- 국제심판
- 국내심판 〈개정 ‘16. 10. 7.〉
  - 1급
  - 2급
  - 3급

② 장애인양궁협회에서 양성한 심판이라 하더라도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급체계가 아닌 단일 등급인 경우에는 장애인양궁협회의 심판양성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국내심판 3급으로 본다. 〈개정 ‘19. 9. 26.〉

**제29조 (심판등록)** 심판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양궁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양궁협회에 직접 심판등록을 한다.

**제30조 (심판등록 제한 및 취소)** ① 장애인양궁협회 정관 제24조 제2항 1호에서 11호에 해당되는

심판은 등록을 할 수 없다.

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**제31조 (심판등록 시기)** ① 등록기간은 장애인양궁협회에서 결정하되 매년 2월 28일 이전으로 하며, 신규 등록한 심판은 예외로 한다. 다만, 장애인양궁협회로 추가 등록 기간이 규정에 없는 한 5월 31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심판활동을 제한한다. <개정 '24. 01. 25.>

② 추가등록기간은 3월 28일까지로 한다. 단. 부득이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 5월 3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되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16. 10. 7. > <개정 '24. 01. 25.>

③ 심판은 등록 마감일(추가등록 마감일 포함)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. <개정 '24. 01. 25.>

④ 2년 이상 미등록된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.

**제32조 (심판등록 자격)** 심판등록은 장애인양궁협회에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**제33조 (심판등록비)** 심판으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장애인양궁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34조 (심판등록 절차)** ① 장애인양궁협회는 장애인체육회가 운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심판을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 01. 25.>

1. 심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심판카드를 포함한 심판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2. 장애인양궁협회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.
3. 장애인양궁협회는 심판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심사결과를 장애인양궁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② 장애인양궁협회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'24. 01. 25.>

③ 등록 심판의 기본정보, 경기실적, 상벌사항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, 자료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<개정 '24. 01. 25.>

④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심판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'21. 01. 25. > <개정 '24. 01. 25. >

**제35조 (심판활동의 자격)** 장애인양궁협회의 심판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양궁협회의 심판으로서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'24. 01. 25.>

**제36조 (심판활동의 제한)**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한다.

## 제5장 생활동호인 등록 및 활동 <개정 '19. 2. 26>

**제37조 (생활동호인 등록)** 생활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 제3호에 의거 등록을 한다. <개정

’19. 2. 26. >

제38조 (체육동호인등록 제한 및 취소) <삭제 ’19. 2. 26. >

제39조 (생활동호인등록 시기) 등록기간은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을 따르되,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. <개정 ‘16. 10. 7. >

제40조 (생활동호인등록 절차) 생활동호인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[통합정보시스템](#)에 등록하여야 하며, 시·도장애인체육회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’19. 2. 26> <개정 ‘24. 01. 25. >

제41조 (생활동호인 등록지) 생활동호인 활동을 희망하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. <개정 ’19. 2. 26. >

제42조 (체육동호인 등록변경) <삭제 ’19. 2. 26. >

제43조 (생활동호인의 자격)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[장애인양궁](#)의 동호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’19. 2. 26> <개정 ‘24. 01. 25. >

제44조 (생활동호인활동의 제한) 당해 선수로 등록이 된 자는 동일종목 생활동호인으로 등록 및 활동 할 수 없다. <개정 ’19. 2. 26>

## 제 6장 징계조치

제45조 (징계양정 기준) ①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양궁협회에서 정한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.

1. 선수(보호자 포함) :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 금지
  2. 지도자 :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장애인양궁협회의 지도자활동 자격정지
  3. 특수학교 관련자(교장, 관련교사, 코치 등) :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 회부(감독, 코치의 경우에는 제2호의 조치와 병행한다)
  4. <삭제 ’19. 2. 26. >
  5. 심판 :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심판활동 금지
- ② 징계만료 및 징계해제 후 재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.
- ③ 장애인양궁협회는 전항에 따라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종류,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,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④ [통합정보시스템](#)에서의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장애인양궁협회 법제상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계로 조치한다. 다만, 직원인 경우 장애인양궁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다. <개정 ‘16. 10. 7. > <개정 ‘24. 01. 25. >

제46조 (위반자 조치절차) ①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양궁협회는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등록규정 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, 징계대상자 및 기간 등을 규정하여야 하며 장애인양궁협회의 법제상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.

- ② 특수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.
-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경감, 변경 또는 해제시킬 수 없다.
- ④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해제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2016. 10. 07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이 규정이 제정되면 기존 선수 및 지도자 등록규정은 폐지된다.

② 지도자등록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등록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③ 심판등록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등록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④ 선수 및 지도자는 제13조 제4항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한하여 도핑방지교육으로 인한 등록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⑤ 이 규정 제14조, 제27조, 제42조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의 주소지 등록은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 적용한다. 단, 시행 전까지는 개인 또는 단체(팀)가 소속되어 있는 시·도지부에 등록한다.

⑥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19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.

## 부 칙('19. 2. 26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① 이 규정 제7조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선수등록은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.

## 부 칙(2021. 01. 25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제19조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, 2022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.

## 부 칙(2022. 02. 21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제19조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, 2023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.

**부 칙(2023. 02. 08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4. 01. 25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장애인체육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별첨1. [별지 제1호 서식]

# 이적동의서

성명 : (인)

생년월일 :

## 현 소 속 팀 :

본 ○○○○장애인양궁협회 소속인 상기 선수를 두 시·도 간의 합의와 선수동의를 근거로 이적에 동의합니다.

## □ 이적조건

1.  
2.  
3.

100

100

0000 장애인양궁협회

○○○○ 장애인양궁협회

회장 : (인)

회장 : (인)

### [별지 제2호 서식]

# 이 적 합 의 서

성명 : (인)

**생년월일 :**

## 현 소 속 팀 :

본 ○○○○ 장애인양궁선수단 소속인 상기 선수를 두 시·도 및  
두 팀 간의 합의와 선수동의를 근거로 이적에 합의합니다.

## □ 이적조건

1.  
2.  
3.

문월일

○○○○ 장애인양궁협회

회장 : (인)

년 월 일

○○○○ 장애인양궁협회

회장 : (인)